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 공정위 제재 사건을 지원하여, 법원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정원은 이에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하였고, 소송지원번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무료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생업 또는 경제적인 여건상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활용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부족했던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 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 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소송지원제도 소개
2. 소송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담당 부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광재 (02-6363-9280)
		담당자	대 리	윤혜빈 (02-6363-9287)



1. 사업 개요

- ☐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맹점사업자·대리점주에게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연결하여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
- ☐ 조정원이 소 제기에 따른 소송 지원금을 지원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민사 소송 제기 가능

2.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조정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상담 결과 소제기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맹·대리점사업자
- ☐ (지원금액) 사건의 경중, 소송 가액 및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각 심급별 3백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3. 진행 절차

- ☐ 소송지원 신청서 제출 → 소송지원 협의회 개최 및 심의 → 소송지원 변호인단 변호사 배정 및 소송지원금 지급

4. 추진 실적

<최근 3개년 가맹·대리점 소송지원건수 >

(단위: 건)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단위: 건)	16	22	15	53

가맹·대리점분야 소송지원 제도 안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사업자·대리점주에게 외부 소송지원번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아래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
 - ②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대리점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ofair.or.kr) →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 공지사항 게시판 내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방문접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지원대상

-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대리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 ②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상담 결과, 소송 제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비용

무료 지원

유의사항

-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소송지원 여부 결정
- 소송지원 결정 시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외부 소송지원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되, 인지대·송달료 및 승소 시 변호사 보수 등은 신청인이 부담

지원절차



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 1855-1490
✉ support@kofair.or.kr

1. 설립목적

-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2. 주요 업무

-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자 피해구제
 -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2023년 3,481건 접수 및 3,151건 처리
- ☐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
 -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법률조력 등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3. 예산 및 조직 규모(2025년 기준)

- ☐ 예산액: 14,608백만 원
- ☐ 정원: 121명
- ☐ 조직: 4실 1센터 16팀